

2020년 하반기 공무원근로자(국도관리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

2020년도 하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근로자(국도관리원) 채용 시험(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20-103호)에 따른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8일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직종	응시번호	성명	생년월일	비 고
홍천국토 도로보수원	홍천보수원-001	남○진	1992-08-29	
강릉국토 도로보수원	강릉보수원-006	김○수	1975-11-18	
	강릉보수원-007	윤○욱	1974-07-10	
	강릉보수원-008	김○광	1993-04-26	
정선국토 도로보수원	정선보수원-001	김○성	1971-01-07	
홍천국토 운행제한단속원	홍천단속원-007	송○석	1973-07-10	
	홍천단속원-011	허○결	1991-01-23	
정선국토 운행제한단속원	정선단속원-004	변○길	1970-03-18	

※ 최종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 예정

2. 임용관련 서류 제출 안내

가. 제출서류('20. 12. 18.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)
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각 1부
*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전부 기재된 것으로 발급
-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)
- 사진(3cm × 4cm) 3매(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)

나. 제출기간 및 제출처

- 제출기간 : '20. 12. 21.(월) ~ 29.(화) 18:00 까지
- 제출처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방문제출)
 - 주소 :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, 원주지방국토관리청
 - 참고홈페이지 : <http://www.molit.go.kr/wrocm>
- 유의사항 : 임용관련 서류 제출 시 근로계약 체결예정으로 **우편접수는 불가함**
※ 반드시,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최종합격자 유의사항

-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'20. 12. 29.(화) 18:00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로 방문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기간 내에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(채용포기)으로 간주합니다.
- 제출서류 허위사실 확인 및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[서식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. 12. 24.>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허리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증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부 X선 검사	
기 타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	[]합 격	합격 사유
합격 여부	[]판 정 보 류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210mm × 297mm 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